의과대학 학생 보건 진료소 규정

제1조 (목적)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 보건 진료소를 둔다.

제2조(구성)

1. 학생 보건 진료소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가정의학과 내에 둔다.
2. 소장은 가정의학교실의 전임교원 중에서 의과대학장이 임명한다.
3. 학생 보건 진료소에는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의사와 간호사를 각 1인 이상 둔다.

제3조 (기능)

1. 학생의 정기 건강 검진
2. 학생을 위한 양호실 운영
3. 학생의 성인예방접종과 관련된 사항
4. 학생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및 협력병원 이용을 위한 지원과 협력
5. 학생의 감염 및 환경위험과 관련된 사항
6. 기타 학생 건강관리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3년 7월 29일 부터 시행한다.